

파주시통·리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이 조례안은 2003년 7월 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
2003년 7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1. 개정이유

- 대규모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증가로 인해 통·리·반의 규모가 비대하여 주민들의 반상회 운영 등 행정 수행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실에 맞게 분리 조정하고,
- 또한, 계단식 아파트임에도 라인별로 반 평성이 되어 있지 않아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엘리베이터 기준으로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현행 301통·리 1,788개반을 3개리 204개반을 증설하여 304통·리 1,992개반으로 조정
- 문산읍에 당동주공아파트, 교하읍에 교하 2차월드메르디앙, 교하 2차 현대아파트 신축에 따른 당동4리, 다율4리, 목동2리로 3개리를 증설하고,
- 문산읍 운천2리 5반, 팻읍 파주2리 8반, 법원읍 법원2리 2반, 대능1리 2반, 교하읍 야당3리 1~4반, 야당4리 1반, 조리읍 오산1리 1반, 3~4반, 장곡1리 6반, 금촌2동 8통 2반 지역은 도시화 및 아파트·연립주택증가로 인한 과대반에 대하여 반을 별지와 같이 분리 신설하며,
- 문산읍 당동1리 3반, 교하읍 와동5리~와동8리, 동패6리, 조리읍 대원4리, 대원5리 지역은 계단식 아파트임에도 라인별로 반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반을 별지와 같이 재편성하여 117개반 증설

3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증가로 인해 통·리·반의 규모가 비대하여 반상회 운영 등 행정 수행 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을 현실에 맞게 분리조정하고 또한 아파트 지역 일부 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엘리베이터 기준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.
- 현행 301개의 통·리 1,788개반을 3개리 204개반을 증설하여 총 304개의 통·리 1,992개반으로 조정하는 것임.
-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과 제5항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·분합할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근거에 문제점이 없으며 파주시통·리·반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통은 4내지 30개반으로 반은 20내지 80가구(읍면지역은 20내지 50가구)로 구성하도록 한 확정기준에 부합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
- 또한, 금번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지난 2003. 1. 2 ~ 1. 26일 (25일간) 행정구역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전체적인 조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그러나, 우리시는 신도시개발 및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아파트 신축 등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 상태로 통·리·반이 계속 증가할 경우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만큼 반의 규모를 확대하여 거대반 형태의 반 조직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
지방자치법

제4조 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 ⑤통·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통·리를 2개이상의 통·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통·리를 하나의 통·리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 통·리(“행정통·리”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
⑥제5항의 행정통·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